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0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10007	디에스 네트웍스㈜	김영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 (서초동)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2016.9.13.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9.14.~2016.10.13.)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1호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2013.12.05.)’ 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소규모 단절토지)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망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00	증) 18	3,318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361	감) 102	2,259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7,390	감) 597	6,793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8,880	감) 8,880	-	구역 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18	인접 과소필지 편입 및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259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6,793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하천 제척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	대상지 현황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불부합하여 구역 해제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 도서 참조)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9. 22. ~ 10. 6.(공고일 익일부턴 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86)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02-2094-2173)